

## 전 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

I. 총 괄	/ 1
II. 세부지침	/ 2
III. Q&A	/ 3



경 주 시  
재난안전대책본부

##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

### 행정명령 개요

- ◆ 처분대상 : 경주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- ◆ 처분내용 : 실내 및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 
※ 단,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
- ◆ 처분기간 : 2020.9.19.(토) ~ 별도 해제시 ※ 단,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: '20.9.19.~'20.10.12.

## I 총 괄

### □ 필 요 성

- 「2m의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일상생활에서도 습관화하면 상당 부분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」 - 중대본
- 경주시 전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본격 시행으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지침 마련

### □ 의무착용 대상자 범위 : 경주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
- 경주시 거주자가 다른 행정구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의무 착용 대상은 아님. 단, 방문 행정구역이 마스크 의무착용 지역일 경우에는 마스크 필수 착용 대상임

### □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: 경주시 행정구역에 소재한 실내 및 실외

- (실내기준) 버스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
- (실외기준)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
  - 집합, 모임, 행사(공연),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
  - 생계·주거를 같이하는 사람(가족) 이외의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

## II 세부지침

### □ 마스크 착용기준

- 마스크 종류 : 보건용, 수술용, 비말차단용 마스크  
단,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'의약외품'마스크 착용 권고  
※ 망사용마스크 등은 현재까지 비말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착용 불인정
- 착용방법 : 마스크로 입·코를 완전히 가려 얼굴과 사이에 틈없게 착용  
- 입만 가리는 착용, 턱에 걸치는 착용, 코만 가리는 착용은 불인정  
- 마스크 착용시 걸을 만지는 행위 금지

### □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 :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경우

- 일상적 개인생활 공간에 있을 때  
- 실 거주공간(집), 차량(승용차), 1인 사무실 등에 생계·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 
※ 생계·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개인생활 공간에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
- 음식물을 섭취 할 때 ※ 단, 음식물 섭취 전·후 및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
-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 
- (만0세~만5세) 영유아, 중증환자  
-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로서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곤란한 경우
- 직업, 위생 등 관련 특수성에 따른 경우 ※ 해당 활동 전·후 마스크 착용  
- 운동선수, (관악기)연주자, 방송인·예술가 등이 촬영이나 공연 등에 출연 시  
- 마스크를 벗어야만 검진·진료·투약 등 의료행위가 가능한 경우
-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 
- 수영·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마스크를 벗는 경우
-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

\* 의무착용 예외사항에 해당하더라도,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

## III Q&A

### Q1. 집안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지?

- 사생활 공간인 집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됨
- 단, 휴가 명절 등에 따라 타지역,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의 방문시는 마스크 착용
- 또한, 가족 중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

### Q2. (만0세~만5세)영유아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는지?

-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님
- 다만, 어린이집·유치원 등 집단생활 및 공동차량 이용 등에 따라 마스크 착용 권고

### Q3.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?

- 마스크 착용시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중증환자,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호흡기 기저질환 환자 등은 예외를 인정함
- 기타 마스크를 쓰기 현저히 곤란한 환자가 있는 경우, 전문의의 소견에 의거 마스크 의무 착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

### Q4. 흡연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?

- 음식물을 섭취 할 경우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,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,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
- 단, 마스크를 벗고 흡연 중 감염 전파 우려가 있고, 흡연자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, 금연을 강력히 권고함
- 불가피 흡연을 하는 경우 타인과 거리두기 및 대화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 필요

Q5. 공무원들은 브리핑 때 왜 마스크 착용을 안 하는지?

- 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에서 외교·수사·구조·구호·공보 등 공무수행 시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당초 공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예외인정
- 신속·정확한 공공정보 전달이 필요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, 브리핑 전·후 및 주변 관계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.

Q6.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입만 가린 것도 마스크 착용의무를 이행한 것인지?

-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착용법으로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음
-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함

Q7. 식당과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?

- 카페나 음식점에서 식품 섭취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나, 음식을 섭취하기 전·후나 대화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

Q8.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?

- 노래연습장은 일반적으로 3밀(밀폐·밀접·밀집) 특성상 고위험 시설로 지정되어 감염병 유행시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함
- 부득이한 경우 노래 부를 때 포함,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

Q9. 결혼식장 마스크 착용 기준은?

- 결혼식장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원칙
- 다만 정부의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-2544)을 반영, 신랑·신부에 한하여 결혼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예외가 인정
  - ※ 단, 단체 기념사진 촬영 시에는 모두 마스크 착용하여야 하며, 촬영시에만 일시적으로 신랑·신부, 양가부모님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 인정

Q10. 야외에 설치한 천막(ex:몽골텐트)에서의 마스크 착용 기준은?

- 천막 설치가 집합, 모임, 행사,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
- 삼면을 막아 통풍이 되지 않게 설치할 경우, 가족이 아닌 타인과 같이 있을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

Q11. 워터파크나 계곡같은 장소에서 물놀이시 마스크 착용여부?

-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타인과의 접촉이 잦은 워터파크나 계곡 등 출입자체 권고함.
- 단, 부득이 수영,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물속 활동 전·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.

Q12. 등산, 산책, 야외 운동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?

- 등산, 산책, 야외 운동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마스크 착용 권고

Q13. 1인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지?

- 사업장에 혼자 있거나 가족만 함께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
- 단, 외부사람이 방문하여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.

Q14. 엘리베이터 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지?

- 엘리베이터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충분한 환기등이 어려워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함께 대화 자제 필요.

Q15. 과태료 부과는 언제부터 하는지?

- 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근거 법규인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 제2항, 제4항의 경우 8.12. 개정되어, 10.13.부터 시행될 예정임

Q16. 언제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지?

-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으로, 향후 1단계로 하향될 경우 행정명령 해제 예정
- 착용 의무화 해제 이후에도 '생활 속 거리두기' 방역수칙에 따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

Q17.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 위반자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?

- 계도 기간 중에는 별도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고, 홍보 및 안내에 집중
- 계도기간 종료 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위반자 신고 창구 및 신고 방법에 대해 별도 공지 예정

\* 코로나19의 임상 역학적 특성이나 행정명령 단계에 따라 세부지침은 수정될 수 있음

참고1 마스크 종류 및 상황별추천마스크



- KF94 마스크** ·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
  - KF80이상 마스크**
    - 기침,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
    - 건강취약계층<sup>①</sup>과 기저질환자<sup>②</sup>가 다른사람과 접촉하는 경우
  - 비말차단용·수술용 마스크**
    -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·더운 여름철·호흡이 불편한 경우에 사용이 편리
- <sup>①</sup> 건강취약계층 노인, 어린이, 임산부, 만성질환자 등  
<sup>②</sup> 기저질환자 만성 폐질환, 당뇨, 만성 신질환, 만성 간질환, 만성 심혈관질환, 혈액암, 항암치료환자,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

☁️ 미세입자 차단

호흡 용이성 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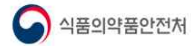
마스크 착용 전 깨끗이 손 씻기



입과 코를 가리고, 틈이 없도록 착용



착용중 마스크 만지지 않기  
만진 후 깨끗이 손씻기



입만 가리는 착용    턱에 걸치는 착용    걸을 만지는 행위    코만 가리는 착용

-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 섭취 전·후나 대화 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
- 잠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면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한 봉투에 보관합니다



**마스크 선택법**

식약처가 허가한 **의약외품**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

**마스크 폐기법**



마스크는 귀에 거는 끈만 이용해 벗은 후 **바깥면을 안쪽으로 접어** 끈으로 감고 **소독제를 뿌려** 종량제 봉투에 버립니다

※ 소독제가 없는 경우 비닐봉지에 넣어 쓰레기봉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